

연성중학교헌장

제1장 총칙

제1조 [설립목적]

- ① 연성중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는 교육기본법 제2조의 교육이념, 초·중등교육법, 경기도교육청주요시책에 입각하여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며, 함께 키우고 같이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, 교직원, 학부모,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의 공간을 만들어 간다.
- ② 본교는 초·중등교육법 제61조에 의해 자율학교로 운영되며,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·운영 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성중학교헌장(이하 “헌장”이라 한다)을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 [교육목표]

본교는 “예절(禮節) 바르고 건강(健康)하고 창의(創意)적인 사람이 된다”는 교훈 아래 다음과 같은 교육비전과 교육목표를 추구한다.

교육비전	즐거운 교실, 행복한 학교
교육목표	· 바른 인성과 예절을 갖추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· 창의적인 생각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사람 · 미래를 준비하며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·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

제3조 [교육프로그램]

본교는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자기 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- ①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독서프로그램 운영
- ②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
- ③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
- ④ 배움과 돌봄이 있는 학생맞춤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
- ⑤ 특기 신장 및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
- ⑥ 교육과정 연계 진로교육 및 체험 중심의 직업 프로그램 운영
- ⑦ 학년별 예술·체육 융합 프로젝트 및 교과 융합 프로그램 운영
- ⑧ 공동체 생활능력 함양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
- ⑨ 학년 철학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, 역사교육 및 독도교육 프로그램 운영

제2장 교육과정

제4조 [교육과정 편성·운영]

교육과정 편성·운영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계획된 본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른다.

제5조 [교과용 도서]

- ① 교육부 검·인정교과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본교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② 검·인정교과서를 선정하거나 새 교과서를 자체 제작할 때는 교과별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.

제3장 교육여건

제6조 [교원]

- 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교원을 확보하며, 학급당 교원 수는 경기도교육청 배정 기준을 따른다.
- ②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할 수 있다.
- ③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기도교육청 기준에 의하여 유지한다.

제7조 [시설설비]

- ① 본교의 교육시설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통교실, 특별실, 학생식당, 운동장 등 다양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.
- ②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교과 연구실, 교사 연수실의 시설을 꾸준히 개선하도록 한다.
- ③ 보통교실과 특별실에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선진화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.

제8조 [학교규모 및 학급규모]

학급 수 및 학생 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 및 학생 정원으로 한다.

제4장 학사관리

제9조 [학생선발]

학생선발은 경기도교육청(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)의 배정 지침에 따른다.

제10조 [학생정원관리]

학생 정원은 경기도교육청(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)의 지침에 따른다.

제11조 [학년도, 수업연한]

- ① 초·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학년도 및 수업연한을 준수한다.
- ②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③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.
- ④ 수업 일수, 휴업일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교 학교 규칙에 따른다.

제5장 학교운영

제1절 인사관리

제12조 [교장]

교장의 인사는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와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장 인사 지침에 따른다.

제13조 [교직원]

- ① 교직원의 배치는 경기도교육청 인사관리 세부기준과 지침에 따른다.
- ②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교원 초빙제를 적극 활용하고 교원의 초빙 절차는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.
- ③ 정규교사를 제외한 기간제 교원과 강사를 채용할 때는 우수한 인력의 채용을 위해 공개 전형을 원칙으로 하며, 별도의 계약에 의해 채용한다.
- ④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외부 강사 초청 연수, 자체 연수 등을 실시하며, 각종 연수 참여를 지원한다.

제2절 재정운영

제14조 [학교회계]

- ① 학교 회계는 「경기도공립학교 회계규칙」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(지방자치단체 지원)은 자치단체의 교육경집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한다.

제15조 [재정지원 및 사업 활용 방안]

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.

제6장 후생복지·지원

제16조 [학생 장학금]

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장학생 선발 규정에 따르며,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7조 [학생 특별활동]

- 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생자치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협력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.
- ② 다양한 동아리를 편성·운영하여 학생 개인의 특기와 취미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.
- ③ 학교 단위의 발표회, 체육행사 활동을 통해 표현의 기회를 확대하고,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한다.

제7장 학교 운영의 투명성

제18조 [학교 재정 운영 공개]

- ① 학교 재정 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예산 편성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
- ③ 예산 집행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운영한다.
- ④ 결산 결과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

제19조 [학사 행정 공개]

- ① 학사 행정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린다.
- ②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, 신뢰성, 공정성을 확보한다.
- ③ 교육과정편성위원회를 운영하여 구성원들의 참여 의식을 높인다.
- ④ 인사자문위원회 운영으로 교내 인사, 포상 및 각종 연수 기회의 공정성을 기한다.

제20조 [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]

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다.

제8장 학교발전계획

제21조 [학교발전계획]

- ① 본교의 중·장기 발전계획은 학교의 설립이념,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수립한다.
- ② 인사·조직·경영은 교무행정 중심에서 혁신학교 운영 및 학년중심제 운영에 맞게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운영한다.
- ③ 교사의 전문성을 심화하기 위한 교육·연구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한다.
- ④ 교사 수, 학급당 학생 수, 교육과정 운영, 학교 재정 확충 및 교육시설의 현대화 등 제반교육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
- ⑤ 중·장기 발전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2조 [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]

- ①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시설(학교 도서관 등)을 개방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.
- ② 인근 지역 사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의 특기·적성 프로그램 및 학부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및 부적응 학생 등에게 필요한 상담 및 교육활동,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9장 부칙

제23조 [학교헌장 개정]

- ① 학교헌장을 개정할 경우에는 학교헌장위원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② 학교헌장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(학교장), 부위원장(교감), 위원(보직교사)와 간사(업무담당자)로 하며, 필요시 교직원 회의를 거쳐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.
-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된 학교헌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표한다.
- ④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.

제24조 [지정 해제 시 재학생 보호 대책]

자율학교 지정 해제 시 학교 실정을 감안하고 교직원·학생·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재학생들에 대한 학사 운영을 졸업 시까지 계속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교육과정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25조 [공표·시행]

이 헌장은 2022년 3월 1일 공표 후 시행한다.